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1 채용 인원 및 채용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선발 (54명)

순	채용직종	채용인원	순	채용직종	채용인원
1	교무실무사	15	3	교육복지조정자	1
2	특수교육지도사 (일반)	28	4	교육복지사	7
	특수교육지도사 (장애)	2	5	임상심리사 (Wee센터)	1

○ 시·군 단위 선발 (183명)

순	채용직종	채용 인원 및 채용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6	조실무리사	52	24	14	10	15	6	5	5	3	5	6	4	5	8	162
7	늘실무보사	3		2	1	3	3		1		1	1	3	3		21
합 계		55	24	16	11	18	9	5	6	3	6	7	7	8	8	183

## 2 직종별 담당 업무

직종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형태)
교무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li> <li>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40시간 (상시근무)</li> <li>학교 근무</li> </ul>
특수교육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li> <li>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40시간 (방학 중 비근무)</li> <li>학교 근무</li> </ul>
교육복지 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복지우선지원 지자체·지역 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li> <li>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 및 연계학교 지원(연수, 컨설팅, 평가 지원)</li> <li>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관리 및 집행</li> <li>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등에 관한 사항</li> <li>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li> <li>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역자원 발굴 연계</li> <li>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40시간(상시근무)</li> <li>기관(학교) 근무</li> </ul>
교육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li> <li>학교의 대상학생 발굴과 사례관리 등 학생 맞춤형 지원</li> <li>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li> <li>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및 교사 연수 등 지원</li> <li>방학 중 교육복지 대상 학생 프로그램 운영</li> <li>학교-지역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구축</li> <li>교육복지실 운영 관리 및 행정업무(학생 지원내용 기록 및 관리, 행정문서 처리 등)</li> <li>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역자원 발굴 연계</li> <li>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40시간(상시근무)</li> <li>학교(순회) 또는 기관 근무</li> </ul>
임상심리사 (We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상담 및 사례 관리</li> <li>심리(검사)평가 운영 및 심리평가보고서 작성</li> <li>위기학생 지원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40시간(상시근무)</li> <li>기관 근무</li> </ul>

직종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업무</li> <li>○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센터 운영 관련 기타 업무</li> </ul>	
조리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료의 검수 및 지원</li> <li>○ 급식계획에 따른 조리업무(조리·배식 등 전 과정)</li> <li>○ 급식설비 및 기구 위생, 안전실무</li> <li>○ 그 밖의 급식에 관한 사항</li> <li>○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40시간 (방학 중 비근무)</li> <li>· 학교(기관) 근무</li> </ul>
늘봄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 담당</li> <li>○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지원</li> <li>○ 늘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li> <li>○ 늘봄학교 예산 편성 및 운영</li> <li>○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수요조사, 민원처리 관련 업무</li> <li>○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기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30시간(상시 근무)</li> <li>· 근무시간 11시30분~18시 (휴게시간 포함)</li> <li>· 학교(순회) 또는 기관 근무</li> </ul>

- ※ 채용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선발” 인 경우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모든(도서벽지 포함) 학교 또는 기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 시·군 단위 선발 직종(조리실무사, 늘봄실무사)은 반드시 희망 근무지역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 특수교육지도사(장애)의 경우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로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 ※ 사업계획 및 기관(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지,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교육복지사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간, 학교간, 학교-기관간 순회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 ○ 공통자격

- (응시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8. 2. 11.이전 출생자)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일까지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결격 사유

- 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검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직종별 응시자격

직종	응시자격	응시자격문의
교무실무사	◦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중등교육과 (중등학사지원담당) ☎ 239-3344
조리실무사	◦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문예체건강과 (급식담당) ☎ 239-3416
특수교육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유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239-3298
늘봄실무사	◦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미래교육과 (늘봄·복지담당) ☎ 239-3201

직종	응시자격	응시자격문의
<p>교육복지 조정자 (①·② 모두 충족)</p>	<p>◦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① 4년 이상의 <b>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b>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의 <b>전북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b>이 있는 자</p> <p>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조정자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교육복지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p> <p>②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관련 학위 소지자</li> <li>2.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학교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성평등가족부), 평생교육사(교육부) 자격증 소지자</li> </ol> <p><b>※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 및 전북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 3 참고</b></p>	<p>미래교육과 (늘봄·복지담당) ☎ 239-3219</p>
<p>교육복지사 (①·② 모두 충족)</p>	<p>◦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① 1년 이상의 <b>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b>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b>전북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b>이 있는 자로서,</p> <p>②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관련 학위 소지자</li> <li>2.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학교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성평등가족부), 평생교육사(교육부) 자격증 소지자</li> </ol> <p><b>※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 및 전북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 3 참고</b></p>	<p>미래교육과 (늘봄·복지담당) ☎ 239-3219</p>
<p>임상심리사 (Wee센터)</p>	<p>◦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li> <li>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보건복지부)</li> <li>③ 임상심리사 1급(한국산업인력공단)</li> <li>④ 임상심리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li> <li>⑤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li> </ol>	<p>민주시민교육과 (학생체험활동담당) ☎ 239-3469</p>

※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제출 마감일('26. 2. 26. 18:00)까지 취득한 경우에 해당

※ 응시자의 자격요건은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확인함.

## 4 채용 방법(공개경쟁채용)

### ○ 1차 필기시험

응시 직종	시험 방법	시험 출제처	평가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실무사</li> <li>○ 조리실무사</li> <li>○ 특수교육지도사</li> <li>○ 늘봄실무사</li> <li>○ 교육복지조정자</li> <li>○ 교육복지사</li> <li>○ 임상심리사(Wee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검사</li> <li>○ 직무능력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전문 기관 위탁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li> <li>- 인성검사(50%)</li> <li>- 직무능력검사(50%)</li> <li>※ 총점 40점 미만은 과락</li> </ul>

#### - 인성검사(객관식 200문항, 40분)

- 응시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 성향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성실성, 대인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집단평균 중심의 표준편차 단위로 표준 점수화하여 최종점수 산정합니다.

#### - 직무능력검사(객관식 50문항, 50분)

-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지적 능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언어 논리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산정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필기시험 항목				
구성	검사항목	문항수	소요시간	문제지 유형
인성검사 (공통)	근면성, 책임감, 적극성, 리더십, 사교성, 배려심, 준법성, 감정통제, 침착성, 정서안정 (10개 영역)	200문항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위형(예, 아니오),</li> <li>○ 선택형(2문, 4문, 5문)</li> </ul>
직무능력검사 (직종별)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늘봄실무사, 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Wee센터)]	50문항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지 선다형</li> </ul>
	[조리실무사]	50문항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지 선다형</li> </ul>

**【자격기준 관련 심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각종 증빙자료의 경력, 자격 등에 대한 신뢰성 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자격기준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 직종	평정 분야	시험 운영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실무사</li> <li>○ 조리실무사</li> <li>○ 특수교육지도사</li> <li>○ 늘봄실무사</li> <li>○ 교육복지조정자</li> <li>○ 교육복지사</li> <li>○ 임상심리사(Web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li> <li>○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li> <li>○ 업무 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교육청 자체시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li> <li>○ 면접위원 3인 1조 편성</li> <li>※ 총점 40점 미만은 과락</li> </ul>

## 5 시험에 대한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취업지원대상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스캔·첨부하고, 가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 확인서 미제출·가점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산방법: 1차, 2차 시험에 각각 적용
  -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시·군 단위선발)별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시·군 단위선발)별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하고,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직종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가산방법: 1차 필기시험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해당점수를 가산(1차 필기시험에만 적용)

직종명	자격증 종류	가산점	비고
조리 실무사	조리기능장	7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중복 가능 · 해당 자격증 중 최상위 점수 자격증 1개만 적용
	한식·중식·양식·일식조리 산업기사	6점	
	한식·중식·양식·일식조리 기능사	5점	

※ 자격증 취득 기준일은 원서제출 마감일(2026.2.26.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을 말함

## 6 시험 시행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시간)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필기시험	2026. 3. 18.(수)	2026. 3. 28.(토) (10:00~11:40) ※ 입실 09:20까지	2026. 4. 24.(금)	
2차 면접시험	2026. 4. 24.(금)	2026. 5. 2.(토) (13:00~18:00)	2026. 5. 15.(금)	

-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누리집(<http://www.jb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교육공무직시험)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 1차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누리집(<http://www.jbe.go.kr>)에서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 원서제출)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 접속 →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채용시험, 응시직종 및 지역 선택 → 로그인(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수) → 응시원서 접수
  - ※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제출(우편 제출은 불가)
  - 원서제출기간: 2026. 2. 23.(월) ~ 2. 26.(목) 09:00 ~ 18:00 (4일간)
- (방문 제출): 온라인 원서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에게 원서제출지원서비스 운영
  - 준비물
    - **본인 직접 방문** ① 신분증 ② 사진파일(여권사진), ③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④ 직종별 응시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⑤ 가산 자격증(조리실무사,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지원대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장소: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2회의실, 14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응시표는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 2026. 3. 18.(수) 이후 출력 가능**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 (<https://edurecruit.go.kr>) → 채용분야 교육공무직 클릭  
→ 지역 선택(전북)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등으로 방문접수한 경우 응시표 본인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2026. 3. 18.(수) 이후 방문접수처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제출 시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지역과 직종, 일반·장애인 모집에 중복(동시)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고,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직종별 응시자격 증빙서류, 가점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서 접수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일(2. 11.)이후에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붙임5 ‘온라인 원서접수 매뉴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시 등록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진규격: 가로 3.5cm×세로 4.5cm)

	<p>□ 사진 파일 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li> <li>-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li> <li>- 해상도는 300dpi 권장</li> <li>-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li> <li>-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li> <li>-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li> <li>-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li> <li>- 파일형식(JPG, GIF, PNG, JPEG)</li> <li>- 파일크기(1MB 이하)</li> </ul>
---	--

-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원서제출지원장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에서 응시표 출력 불가)
- 시·군 단위 선발의 경우 지역별 경쟁률, 최종 합격 점수선이 다릅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필요에 따라 장애인편의지원 “요청” 을 선택하고, 필요한 편의지원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원서제출지원서비스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공고문 붙임1】** 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장애증명서류(원본지참)
- (편의지원내용)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기) 원서제출기간: 2026. 2. 23.(월) ~ 2. 26.(목) 09:00 ~ 18:00 (4일간)
- (장소)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2회의실, 14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후 편의지원 제공 여부 결정

○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 ☎ 063) 239-0879~0884

## 8 제출 서류(원서 접수 시 첨부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원서접수시	<b>[공통]</b>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26.2.11.)이후 발행 -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포함 - <b>(주의)</b>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가산 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b>[조리실무사]</b> ○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조리 자격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원서접수시	<b>[특수교육지도사]</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b>[특수교육지도사(장애)]</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인터넷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등	
	<b>[늘봄실무사]</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b>[교육복지조정자]</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b>[교육복지사]</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b>[임상심리사(Wee센터)]</b> ○ 응시 필수 자격요건 부합 증명서 - 자격증	
최종합격자	<b>[공통]</b>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2026.2.11.)이후 발행 -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포함 - ( <b>주의</b> )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 제출용)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활용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부정 합격 시 합격 취소 사전 확인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조리실무사)	- 서류는 채용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제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복결핵검진확인서 또는 (잠복)결핵 치료확인서 1부 (채용 후 1개월 이내)</li> <li>○ 검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li> <li>○ 채용 유예 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1부(원본)</li> <li>- 병역: 복무확인서 1부, 전역예정증명서 1부.</li> <li>- 임신·출산: 임신확인서(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1부.</li> </ul> </li> <li>※ 채용유예는 위의 사유 외는 불인정</li> </ul>	

○ 원서접수 및 최종합격자는 공고문 등에 안내되는 직종별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미제출하거나 진위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 9 합격자 결정

### ○ 1차 필기시험

-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예정 인원의 1.3배수 합격자 결정(소수점 발생 시 절상하여 인원산정)
  -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합격자 결정
- 1차 필기시험 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격선의 동점자 발생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2차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자격기준 적격자)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평정 및 배점) 다음 평정 요소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구분	평정 요소	비고
공통	1.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4번과 5번은 1·2·3번 항목과 병행
직무(기초)	2. 해당직종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기초)	
직무(심화)	3. 해당직종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심화)	
일반	4. 업무관련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배점: 100점 만점(총 5개 평정요소로 각 20점)
- 평정단위(점수) : 탁월(16~20점), 우수(11~15점), 보통(6~10점), 미흡(1~5점)
- 5개 평정요소 단위별로 각각 점수 부여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점수반영 방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면접위원들 부여 점수를 각 평정요소별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
  - 면접시험 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기준) 1차 필기시험(50%) 점수와 2차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결정 방법은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1차 필기시험 고득점자
  - ③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 ④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 순

## 10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 (정년) 60세
- (수습기간) 신규채용 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운영합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1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처) 최종합격자는 채용기관장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합니다.
- (보수 등 처우)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순	직종	(2025년) 기본급(월)	기본급 지급유형	비고
1	교무실무사	2,066,000원	II 유형	※ 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및 지급 방법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2	조리실무사	2,066,000원	II 유형	
3	특수교육지도사	2,066,000원	II 유형	
4	늘봄실무사 (6시간)	1,549,500원	II 유형의 시간비례	
5	교육복지조정자	2,266,000원	I 유형	
6	교육복지사	2,266,000원	I 유형	
7	임상심리사(Wee센터)	2,266,000원	I 유형	

### ○ 근무지 발령 예정 시기

-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성적순)에 따라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발령됩니다.
- 채용기관의 채용일정에 따라 발령예정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2조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준용하여 2년으로 합니다.

### ※ 채용유예 인정 기준 (※아래 사유 외 불인정)

- ① 학업의 계속
- ② 병역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기간은 유예기간에 미포함)
- ③ 임신·출산

※ 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용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한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직종별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응시 자격 등 증빙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응시표를 미지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후 시험응시
    - ※ 신분증 미지참 시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증 미지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험에 응시하고, 추후 안내된 기한 내에 응시자 신분증 확인
    - ※ **신분증, 응시표 모두 없는 경우는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 지참
- 또한, 시험 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 불가)
  - 시험 시작 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 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 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다기능시계,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차 필기시험의 답안은 OMR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 카드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운영되며, 부득이한 경우 시험감독관이 시작, 종료 안내)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적용에 따라 응시 연령 등 연령기준에 “만” 표시는 생략합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be.go.kr>>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교육공무직시험)에 안내합니다.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 (☎ 063)239-0879~0884)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교육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공고문 붙임2]을 작성하여 팩스 (063-237-5236)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교육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13 응시원서 접수(온라인 접수)

1. 응시원서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2. 접수기간: 2026. 2. 23.(월) 9:00 ~ 2. 26.(목) 18:00(4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2. 26.목)에는 18:00 마감.  
마감 이후에는 접수·수정·취소 불가

### 3. 접수방법

☞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https://edurecruit.go.kr>) 접속 → “교육공무직” 클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선택 → “원서접수”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원서접수 서약서 및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클릭 → 응시분야의 “직종 및 지역” 선택 → “응시원서” 작성 (여권사진, 인적사항, 초본, 학력, 가점, 경력, 자격사항 등) 및 증빙자료 등록 → 저장 → 접수완료

※ 직종별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스캔·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상연락처는 휴대전화와 같아도 무방함

※ 특수교육지도사(장애)로 응시하는 경우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로 반드시 선택 후 원서접수

### 4. 접수확인 방법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클릭 → “접수증 출력” 클릭

### 5. 수정 및 취소 방법(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목록 → 조회 클릭

· 수정할 경우: 수정 후 저장 클릭 / 취소할 경우: 다음 → 접수취소 클릭

### 6. 응시표 출력 방법

☞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 “응시표출력” 클릭

※ 응시표는 2026. 3. 18.(수) 10:00부터 「온라인교직원채용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며,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심사 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원서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요. 「응시번호」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7.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인적사항	원서접수시 증명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여권사진으로 반드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함.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제출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JPG, PNG, BMP, GIF 확장자 파일로 업로드
학력사항		PDF 또는 JPG, PNG, BMP, GIF, PDF 확장자 파일로 업로드
경력사항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	
자격사항		

<b>수정 및 취소</b>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2.26.(목)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 불가
<b>중복접수 불가</b>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응시불가)은 응시자 책임
<b>접수 확인</b>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 필요(응시표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상 접수) 하고, 기재 착오, 첨부파일의 누락 또는 확인불가,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인하여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책임임.
<p>● <b>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b></p> <p>※ 응시원서 접수 시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하여 원서접수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지원자가 대거 몰릴 수 있으니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미리 접수</p>	

- 【붙임】**
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3.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 및 전북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력 1부.
  4. 경력증명서(서식) 1부.
  5. 온라인 원서접수 매뉴얼 1부. 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붙임3】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 및 전북지역 네트워크 활동 경력**

<p><b>(지역네트워크 활동 인정 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굿네이버스 전북지부</li> <li>■ 사회복지협의회</li> <li>■ 성폭력상담소</li> <li>■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역본부</li> <li>■ 월드비전 전북지부</li> <li>■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li> <li>■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li> <li>■ 정신건강복지센터</li> <li>■ 종합사회복지관</li> <li>■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li> <li>■ 지역아동센터</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li>■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li> <li>■ 청소년문화의집</li> <li>■ 청소년수련관</li> <li>■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li> <li>■ 드림스타트</li> <li>■ 가족센터(다문화, 건강가정)</li> <li>■ 교육지원청 Wee 센터</li> <li>■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지사</li> <li>■ 전북스마트 씬 센터</li> <li>■ 희망복지지원단</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li> </ul> <p>■ <b>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이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기관에서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아동·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거나 사례 연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li> </ul> <p>※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지정 전북수련기관에서 &lt;학교사회복지사&gt; 1년 수련 시 전북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1년 인정, 수료증 제출</p>	<p><b>(교육, 문화, 복지 분야 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li> <li>■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li> <li>■ 각급 학교</li> <li>■ 비영리민간단체</li> <li>■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 등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평생교육사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li> </ul> <p>※ 위의 기관에 근무하였더라도 아래 해당 경력에 대해서는 미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교원대체, 강사 근무 경력</li> <li>- 성인 및 유아대상 경력</li> <li>- 일반행정업무 경력 등</li> </ul> <p>※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아래 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li> <li>■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li> <li>■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li> <li>■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li> </ul> <p>※ <b>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li> <li>- 경력증명서 서식 공고문 [붙임4] 참고</li> </ul>
---	--

※ 폐업한 기관의 경우: ①·② 서류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공고문 붙임4】

## 경력증명서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재직기간	부서	직종	담당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경력	년 월 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급자</th> </tr> <tr> <td style="width: 50%;">소속</td> <td></td> </tr> <tr> <td>직위</td> <td></td> </tr> <tr> <td>연락처</td> <td></td> </tr> <tr> <td>성명</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10px;">○○○○○장</p>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p>작성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ul>														